

의안번호	325
발의일자	2023. 8. 17
회부일자	2023. 8. 22

제341회 도의회 임시회
제1차 농수산위원회
2023. 8. 30. (수)

『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

# 검 토 보 고 서



농 수 산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이진영

#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박홍열 의원 외 17명

## 2. 제안이유

- 현행 「동물보호법」이 전부개정(2022.4.26. 공포, 2023.4.27. 시행)됨에 따라 「동물보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시행규칙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 함
- 아울러 동물복지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한 위원회 신설과 「동물보호법」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하여 적절한 동물보호·관리와 동물복지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- 경상북도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(안 제4조)
- 동물복지위원회 구성,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 ~ 제6조)
- 동물등록 제외지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
-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 ~ 제10조)
- 보호동물의 공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3조)
- 보호비용의 지급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7조)

## 4. 관련법령

- 동물보호법

## 5. 입법예고 결과

- 예고방법 :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
- 예고기간 : 2023. 8. 23. ~ 8. 28. (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-93호)
- 의견제출 : 없음

## 6. 검토의견

### 가.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

- 상위법인 「동물보호법」 전부개정(2022.4.26. 공포, 2023.4.27. 시행)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,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·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,

### 나.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2조는 상위법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를 규정한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보임.
- 다만, 제2호 및 제3호의 용어 정의에 있어, 같은 조 타 호의 정의와 마찬가지로 상위법상의 근거 조항을 인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.
- 또한, 제7호 후단의 “동물보호센터를 말한다.”는 용어 의미의 명확한 전달을 위해 “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.”로 표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.
- 안 제3조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도지사의 5년 단위 동물복지계획 수립·시행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고, 이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보 및 민간단체에 대한 동물보호 활동 권장과 필요한 지원을 규정함.

- 안 제4조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위원회가 동물복지계획 수립·시행, 동물보호센터의 설치·운영 및 지정 등 동물의 보호·복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종합·조정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.
- 안 제5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·부위원장 선임 방법에 대해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6조는 위원회 회의의 개의 및 의결 요건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.
- 안 제7조는 법 제15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동물등록이 제외되는 지역에 대해서 규정함.
- 안 제8조는 등록대상동물의 예방접종 실시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한 특정 장소 출입 제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, 미이행에 따른 벌칙조항이 부재하여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.
- 소유자등이 등록대상동물에게 매년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것은, 상위법인 동물보호법 제16조제3항에서 “----- 필요할 때에는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-----”의 규정과는 다르게 강제의무를 부여한 것으로, 매년 실시 필요성과 미이행에 따른 벌칙조항이 부재하여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.
- 안 제9조에서는 도지사가 동물의 구조 또는 보호조치 등을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·운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함.

- 안 제10조는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절차에 대한 규정으로, 홈페이지 10일 이상 공고 및 공고기간내 신청서 제출, 동물보호센터 지정에 따른 지정서 발급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,
-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,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도지사가 정할 수 있도록 하며, 만료 30일 전까지의 재지정 신청을 규정하고 있음.
- 이와 관련하여,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재지정도 연속 2회까지 할 수 있도록 했던 규정을 삭제한 것은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수요가 많지 않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보임.
- 안 제11조에서는 동물보호센터의 시설·인력기준 및 준수사항에 대한 도지사의 점검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적절하다고 보이나,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이 없어, 위반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 취소 등 조치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.
- 안 제12조에서는 도지사의 유실·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에 대한 포획·보호조치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였으며,
- 안 제13조에서는 동물의 구호조치시 국가동물보호시스템에 7일 이상 공고하도록 규정함.
- 안 제14조에서는 도지사·동물보호센터장이 동물보호센터의 유실·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에 대한 적절한 보호·관리 조치토록 의무를 부여했으며,
- 도지사가 공수의료 하여금 보호·관리 중인 동물의 질병·부상을 진료하게 하고, 소속 공무원이 보호·관리상태를 수시로 확인·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됨.

- 안 제15조에서는 포획된 유실·유기동물이 등록된 동물일 경우 도지사가 소유자에게 즉시 반환될 수 있도록 할 것과 소유자에게 인계시 구조·보호조치에 든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절하다고 보이나,
- 다만, 제2항의 “바로” 라는 용어가 해석에 따른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보이는 바, 의미를 명확하게 표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.
- 또한, 법 제43조 또는 법 제44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유실·유기동물을 기증 또는 분양할 수 있도록 하고, 이 경우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기증·분양할 수 있도록 했으며,
- 유실·유기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록한 후 기증 또는 분양할 것과, 유실·유기동물이 그 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증 또는 분양 받은 사람에게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함.
- 아울러, 제7항에서 분양·기증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동물보호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과 동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사람으로 한 것은, 동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폭넓게 규정하여 유기·유실 동물 등의 입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안 제16조는 도지사가 피학대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하도록 하고, 동물보호 민간단체가 희망하는 경우 보호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,

- 도지사의 보호기간에 따른 보호비용 청구와 소유자 및 분양받은 자의 보호비용 납부를 규정함.
- 또한, 도지사가 법 제43조 또는 법 제44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피학대동물을 기증 또는 분양할 수 있도록 했으며, 이 경우 보호조치를 하는 동물보호 민간단체에 우선 분양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.
- 안 제17조는 예산의 범위에서 동물보호센터, 공수의 또는 동물 보호 민간단체에 구조·보호조치에 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,
- 유실·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보호비용의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고, 분양하는 경우 분양받은 사람에게 해당 동물의 보호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적절하다고 보이나,
- 다만, 제5항의 “비용징수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.” 는 문구는 용어의 명확성 및 정확한 의미전달을 위해 “비용징수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.” 로 표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.
- 안 제18조에서는 도지사가 시장·군수에게 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 보호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함.
- 안 제19조는 법 제91조에 따라 등록 대상동물의 등록 수수료 감면사항을 규정한 것이며,
- 안 제20조는 도지사가 시장·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.

#### 다. 종합 검토 결과

- 본 조례안은 「동물보호법」의 전부개정에 맞춰,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,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동물의 보호·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- 특히,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이에 따라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, 바람직한 반려동물 문화조성과 동물복지를 위해 개정이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되며,
- 본 조례안을 통해 경상북도의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의 방향을 제시하고, 현실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- 아울러,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관련 절차도 적절히 이행하여 조례 전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# 참고 1

## 동물보호센터 현황

직영
  시설위탁
  위탁

시군	동물보호센터명	운영 형태	수용 가능 마리수	보 호 마리수	운영 인력	운영 비용 (백만원 )	비고 (설치비 지원)
계	22개소(직영 11, 시설위탁 2, 위탁 9)		1,922	2,138	47	2,111	
포항	포항시 동물보호센터	시설 위탁	300	143	8	259	
경주	동물사랑보호센터	직영	100	100	4	96	
김천	김천시 유기동물보호센터	위탁	150	122	1	99	
안동	안동시 유기동물보호센터	시설 위탁	400	500	3	162	
구미	구미시 유기동물보호센터	위탁	50	50	1	80	
영주	영주시 동물보호센터	직영	90	99	1	97	
영천	영천시 유기동물보호센터	직영	50	104	2	99	
상주	상주 유기동물보호센터	위탁	100	200	4	153	
문경	종합가축병원	위탁	30	24	1	87	
경산	경산시 유기동물보호소	위탁	150	150	4	250	
의성	의성동물보호센터	위탁	50	25	1	50	
청송	접곡동물보호센터	직영	20	20	1	13	
영양	영양군 유기동물보호소	직영	26	21	1	36	
영덕	영덕군 유기동물보호센터	직영	60	24	1	180	
청도	청도동물보호소	직영	20	26	1	36	
고령	양성훈보호소	위탁	16	16	1	40	
성주	성주군 유기동물보호센터	위탁	100	326	2	61	
칠곡	칠곡군 유기동물보호센터	위탁	40	40	1	72	
예천	예천군 유기동물보호소	직영	70	70	3	96	
봉화	봉화군 유기동물보호소	직영	10	10	1	25	
울진	울진군 동물보호센터	직영	70	68	4	60	
울릉	울릉군 유기동물보호센터	직영	20	0	1	60	

## 참고 2

## 동물등록 제외지역 현황

시군	행정구역	등 록 제 외	
		읍면동	행정구역명
계	230 읍 37 면 193	211 읍 18 면 186	도서지역 또는 동물등록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·면
포항시	14 읍 4 면 10	13 읍 3 면 10	구룡포읍, 연일읍, 흥해읍, 동해면, 대송면, 장기면, 호미곶면, 신광면, 청하면, 송라면, 기계면, 죽장면, 기북면
경주시	12 읍 4 면 8	7 읍 1 면 6	감포읍, 문무대왕면, 내남면, 산내면, 서면, 강동면, 천북면
김천시	15 읍 1 면 14	15 읍 1 면 14	아포읍, 농소면, 남 면, 개령면, 감문면, 어모면, 봉산면, 대항면, 감천면, 조마면, 구성면, 지례면, 부항면, 대덕면, 증산면
안동시	14 읍 1 면 13	14 읍 1 면 13	풍산읍, 와룡면, 북후면, 풍천면, 일직면, 남후면, 남선면, 임하면, 길안면, 임동면, 예안면, 도산면, 녹전면, 서후면
구미시	8 읍 3 면 5	5 읍 1 면 4	산동읍, 무을면, 옥성면, 도개면, 장천면
영주시	10 읍 1 면 9	10 읍 1 면 9	풍기읍, 이산면, 평은면, 문수면, 장수면, 안정면, 봉현면, 순흥면, 단산면, 부석면
영천시	11 읍 1 면 10	10 읍 0 면 10	청통면, 신녕면, 화산면, 화북면, 화남면, 자양면, 임고면, 고경면, 북안면, 대창면
상주시	18 읍 1 면 17	18 읍 1 면 17	함창읍, 사벌면, 중동면, 낙동면, 청리면, 공성면, 외남면, 내서면, 모동면, 모서면, 화동면, 화서면, 화북면, 외서면, 은척면, 공검면, 이안면, 화남면
문경시	9 읍 2 면 7	8 읍 1 면 7	가은읍, 영순면, 산양면, 호계면, 산북면, 동로면, 마성면, 농암면
경산시	8 읍 3 면 5	4 읍 1 면 3	진량읍, 용성면, 남산면, 남천면
의성군	18 읍 1 면 17	17 읍 0 면 17	안계면, 단촌면, 점곡면, 옥산면, 사곡면, 춘산면, 가음면, 금성면, 봉양면, 비안면, 구천면, 단밀면, 단북면, 다인면, 신평면, 안평면, 안사면

시군	행정구역	등록 제외	
		읍면동	행정구역명
청송군	8 읍 1 면 7	8 읍 1 면 7	청송읍, 주왕산면, 부남면, 현동면, 현서면, 안덕면, 파천면, 진보면
영양군	6 읍 1 면 5	6 읍 1 면 5	영양읍, 청기면, 일월면, 수비면, 석보면, 입암면
영덕군	9 읍 1 면 8	8 읍 0 면 8	강구면, 남정면, 달산면, 지품면, 축산면, 영해면, 병곡면, 창수면
청도군	9 읍 2 면 7	8 읍 1 면 7	청도읍, 각남면, 풍각면, 각북면, 이서면, 운문면, 금천면, 매전면
고령군	8 읍 1 면 7	7 읍 0 면 7	덕곡면, 운수면, 성산면, 다산면, 개진면, 우곡면, 쌍림면
성주군	10 읍 1 면 9	8 읍 0 면 8	용암면, 수륜면, 가천면, 금수면, 대가면, 벽진면, 초전면, 월항면
칠곡군	8 읍 3 면 5	6 읍 1 면 5	북산읍, 약목면, 지천면, 동명면, 가산면, 기산면
예천군	12 읍 1 면 11	10 읍 0 면 10	용문면, 효자면, 은풍면, 감천면, 보문면, 유천면, 용궁면, 개포면, 지보면, 풍양면
봉화군	10 읍 1 면 9	10 읍 1 면 9	봉화읍, 물야면, 봉성면, 법전면, 춘양면, 소천면, 석포면, 재산면, 명호면, 상운면
울진군	10 읍 2 면 8	9 읍 1 면 8	평해읍, 북면, 서면, 근남면, 원남면, 기성면, 온정면, 죽변면, 후포면
울릉군	3 읍 1 면 2	3 읍 1 면 2	울릉읍, 서면, 북면